

##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### 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김 민 구

나. 생년월일: 1974.03.23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 감동

(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제C동 314호)

### 2. 징계내용

가. 징계종류: 업무정지 1월

나. 효력발생일: '22.11.01. ~ 11.30.

다. 사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, 개별요인 비교 및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2년 10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